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신복자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던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규정의 인사청문회 대상 중 ‘정무직 국가공무

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과 제2행정부시장만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과 제2행정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므로 인사검증 절차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정무부시장과 도와 특별자치도의 정무부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사청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고위공직자 임명을 방지하고자 신설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무부시장·지사를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의 인사청문 대상 중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를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로 개정할 것을 건의하

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설명드린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